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770호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고시 제2019-349(2019.10.24.)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된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관계서류의 공람)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관련도서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77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개정 이유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가.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

나. 면적: 14,656.0㎡

3. 정비사업 시행자: (주)무궁화신탁(대표자: 권준명)

- 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4. 시행계획: 생략(관악구청 주택과 및 미성동 주민센터)

5. 관계도서: 생략(관악구청 주택과 및 미성동 주민센터)

6. 공람기간: 공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3. 4. 13. ~ 2023. 4. 27.)

7. 의견제출: 관악구청 주택과

8. 의견제출 방법: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9. 참고사항: 공람중인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안)으로서, 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2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안 제2조)

다. 과징금 감경 제외 대상(안 제3조)

라. 과징금 감경신청 및 절차(안 제4조)

마. 과징금 감경결정 및 관리(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노인청소년과장, 전화: 879-6174, 팩스: 879-7828, email: a123@g.go.kr,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노인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청소년 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